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세 징 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4호”를 “법 제40조제18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u>법 제40조제14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u>법 제40조제18호</u>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3